

고성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468호)

심사보고서

1998. 3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3. 13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8. 3. 16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3. 16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사유

○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개정(1997.3.7 법률 제5301호)에 따라
오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등법,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
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기타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
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종전에는 가정오수처리에 있어 오수정화시설·정화조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였으나
개정된 법률에서는 오수정화시설·합병정화조·단독정화조를 세분하여 규정한 바
이를 조례에 명시함.(안 제2조)
- 나. 고성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·징수하던
과태료 업무를 등 조례에서 부과·징수토록 하고 고성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
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.(안 제6장, 부칙 제2조)
- 다. 방류수수질기준 위반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함
(안 별표 5)

4.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

- 법률 제5301호 ('97.3.7)에 의하여 오수·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보완·개정하고 필요없는 관련조례는 폐지시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종전에는 가정 오수처리에 있어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 이원화 체계였는데 금번 개정법률에서는 오수정화시설, 합병정화조, 단독정화조로 세분하였는데 합병정화조는 어떤 시설인지
- 답 : 여관같은 시설에서 사용하는 오수와 하수를 동시에 정화할 수 있는 시설임.

6. 토론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1998. 3.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